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2. 15.

제 출 자 : 함명섭의원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7년 3월 6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제 획

1. 활동 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
-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- 2007년 3월 6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유인환의원, 이만재의원, 함명섭의원, 김영해의원, 김진석의원
최귀녀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3. 6(화)	제1차 조례특위 (15:0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.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.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	